

심의결과 위안대토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지
제 49 호	제 28 차	1988.12.1	증제 김 건

의안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 개정

의결사항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7조, 제65조
법규조항

제의취지 은행 대출금리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함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의
운용에 관한 제한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비고
<u>"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u> 1.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신 설) 가. (생략) 나. 증서단위금액 : 5천만원 다.라. (생략) 2.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 대출한도 :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액 범위내 나. 대출조건 : 일반자금 대출에 한하되 별도의 개정 ("양도성 예금증서 대출")에 개리하여야 함 3. 취급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4. 기 타 가.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최고이율 및 기타조건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시장 동향 및 여수신 업무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총재는 위의 최고이율을 정하였을 경우 이는 이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양도성 예금증서발행 채무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준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예금지급준비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은 금지한다. 5. 실시일자 : 1987. 2. 13	<u>"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u> 1. 최고이율 :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2. (현행과 같음) 3. 최저 발행금액 : 5천만원 4.~5. (현행과 같음) 6. 취급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7. 기 타 : 자행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전 매입 및 담보취득은 금지 8. 실시일자 : 1988. 12. 5	- CD대출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명칭 정비 -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호 정비 - CD 발행단위금액 조정 o 5천만원 -> 5천만원이상 - 호 정비 - 3호에서 이관 - 4호에서 이관 - 금리자유화에 따른 CD 대출제도 폐지로 별도의 CD대출 개정 필요 - CD대출 금리의 자유화 - 지급준비 관련 조항은 '예금지급준비규정'에 이관